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②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개발
 - ③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 ④ 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다.
 - ② 감염병관리기관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 확산 시 공개된 정보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환자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감염인의 세대주 또는 친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④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응급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응급의료의 제공
 -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 ③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④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기관의 설립·운영
15.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② 보험급여의 관리
 - ③ 요양급여비용 계약
 - ④ 요양급여의 비용효과 평가

16. 「혈액관리법」상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라도 채혈을 할 수 없다.
 - ② 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사항 등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의료기관 폐쇄 명령
 - ② 의료기관 인증 취소
 - ③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 ④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1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한 다음 날
 - ② 국적을 잃은 다음 날
 - ③ 교도소에 수용된 다음 날
 -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가 마약류에 중독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마약류 중독이 완치되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 ① 바로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② 6개월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 ③ 1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 ④ 2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2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령상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품수출국가로 반환해야 한다.
 - ② 통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통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④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